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3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0년 6월 10일

I. 재판 경과

1. 2020 년 1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중인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8 호를 발령하였다.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각 해당 문서별 제출거부를 정당화할 근거를 확인하는 제출예외정보목록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2020 년 2 월 21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시간표를 승인하는 절차 명령 제 11 호를 발령하여 당사자들의 제 2 차 서면 제출기한을 조정하였다.
3. 2020 년 2 월 27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서제출 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2 호를 발령하였다.
4. 2020 년 5 월 30 일, 피청구국은 서신을 통해 중재판정부에 청구인의 문서제출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에게 (i) 청구인의 제출예외정보목록에 제출거부를 정당화할 근거 없이 제출예외로 기재된 특정 문서를 제출하고; (ii) “청구인의 문서제출 가운데 증거의 삭제편집에 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문서 원본의 제출”; 및 (iii)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대응하는 문서 가운데 한국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문서제출상 기타 측면을 고려하면 그 존재가 분명한 문서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특정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국의 신청**”).
5. 2020 년 6 월 1 일, 청구인은 “피청구국에 한국 국민연금 공단이 보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문서를 입수하고 개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한 중재판정부의 이전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미이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추가 명령을 발령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신청**”).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주장서면제출 기한(2020 년 6 월 19 일)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가 문서제출과 관련된 추가 명령에 대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청구국의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을 청구인의 서면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2020 년 6 월 2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제출기한을 유예하고, 피청구국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관한 의견을 2020 년 6 월 10 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신청에서 제기된 안전들을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제 2 차 서면 제출기한을 적절하게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7. 2020 년 6 월 5 일, 청구인은 당사자들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및 당사자들의 제 2 차 서면입장 마감일을 조정한 수정 절차시간표에 합의하였다고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였다. 피청구국은 2020 년 6 월 6 일자 별도 서신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확인하였다.

II. 중재판정부의 결정

8.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대로 청구인의 신청 및 피청구국의 신청과 관련된 추가 제출 절차 및 기한을 승인한다;
 -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시간표를 승인한다; 또한
 - (c)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의 타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논의가 적절한 때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조건하에, 재판은 현 절차 명령의 부속서 1에 재 명시된 수정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부속서 1

| 1단계: 제1차 서면제출 | | |
|--------------------------------------|-------|---------------|
| 수정 청구서면 | 청구인 | 2019년 4월 4일 |
| 반박서면 (및 모든 본안 전 이의제기) | 피청구국 | 2019년 9월 27일 |
| 2단계: 문서제출 및 비분쟁 당사자의 서면제출 | | |
| 문서제출 요청 | 당사자들 | 2019년 11월 1일 |
| 문서제출 관련 이의제기 | 당사자들 | 2019년 11월 22일 |
| 이의제기 관련 답변 (중재판정부에 제출) | 당사자들 | 2019년 12월 13일 |
| 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11.2(4)조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표시 | 미국 | 2020년 1월 6일 |
| 이의제기 관련 중재판정부의 결정 | 중재판정부 | 2020년 1월 10일 |
| 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11.20(4)조에 따른 서면제출 | 미국 | 2020년 2월 7일 |
| 자발적 문서제출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 당사자들 | 2020년 3월 6일 |
| 2020년 6월 1일자 청구인의 신청 | | |
|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국의 의견 | 피청구국 | 2020년 6월 10일 |
| 피청구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 청구인 | 2020년 6월 15일 |
| 중재판정부의 결정 | 중재판정부 | 2020년 6월 22일 |
| 피청구국의 추가 제출 (필요 시) | 피청구국 | 2020년 7월 3일 |
| 2020년 5월 30일자 피청구국의 신청 | | |
| 피청구국의 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 청구인 | 2020년 7월 24일 |
| 청구인의 의견에 대한 피청구국의 답변 | 피청구국 | 2020년 7월 31일 |
| 중재판정부의 결정 | 중재판정부 | 2020년 8월 7일 |
| 청구인의 추가 제출 (필요 시) | 청구인 | 2020년 8월 21일 |

| 3단계: 제2차 서면제출 | | |
|--------------------------------------|-------|-------------------------|
| 재주장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답변서) | 청구인 | 2020년 7월 17일 |
| 재반박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재주장서면) | 피청구국 | 2020년 11월 13일 |
|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 | (청구인) | (2020년 12월 23일) |
| 4단계: 심리 | | |
| 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 | 당사자들 | 2020년 11월 23일 |
| 심리전 회의 | 전원 | 2020년 12월 7일 |
| 심리 | 전원 | 2021년 1월 25일 및 2월 1일 주간 |